[**Ⅰ.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예시** 3](#_Toc158968076)

[**1. 상장대기업** 3](#_Toc158968077)

[**[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]** 3](#_Toc158968078)

[가.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의 운영실태보고서 3](#_Toc158968079)

[나.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의 운영실태보고서 4](#_Toc158968080)

[**[감사(또는 감사위원회)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]** 5](#_Toc158968081)

[가.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의 평가보고서 5](#_Toc158968082)

[나.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의 평가보고서 6](#_Toc158968083)

[**2. 상장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** 7](#_Toc158968084)

[**[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]** 7](#_Toc158968085)

[가.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의 운영실태보고서 7](#_Toc158968086)

[나.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의 운영실태보고서 8](#_Toc158968087)

[**[감사(또는 감사위원회)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]** 9](#_Toc158968088)

[가.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의 평가보고서 9](#_Toc158968089)

[나.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의 평가보고서 10](#_Toc158968090)

[**3. 비상장중소기업** 11](#_Toc158968091)

[**[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]** 11](#_Toc158968092)

[**[감사(또는 감사위원회)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]** 12](#_Toc158968093)

[**Ⅱ. 연결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예시** 13](#_Toc158968094)

[**1. 상장대기업** 13](#_Toc158968095)

[**[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]** 13](#_Toc158968096)

[가.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의 운영실태보고서 13](#_Toc158968097)

[나.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의 운영실태보고서 14](#_Toc158968098)

[**[감사(또는 감사위원회)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]** 15](#_Toc158968099)

[가.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의 평가보고서 15](#_Toc158968100)

[나.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의 평가보고서 16](#_Toc158968101)

[**2. 상장중소기업** 17](#_Toc158968102)

[**[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]** 17](#_Toc158968103)

[가.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의 운영실태보고서 17](#_Toc158968104)

[나.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의 운영실태보고서 18](#_Toc158968105)

[**[감사(또는 감사위원회)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]** 19](#_Toc158968106)

[가.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의 평가보고서 19](#_Toc158968107)

[나.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의 평가보고서 20](#_Toc158968108)

[**Ⅲ. 기타** 21](#_Toc158968109)

[**5. 평가 및 보고 적용 기업 문단54에 따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운영실태보고서 예시** 21](#_Toc158968110)

[**[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]** 21](#_Toc158968111)

[-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의 운영실태보고서 21](#_Toc158968112)

# **Ⅰ.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예시**

## **1. 상장대기업**

### **[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]**

1.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의 운영실태보고서

|  |
| --- |
| xx주식회사 주주, 이사회 및 감사(위원회) 귀중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xx년 x월 x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.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(다른 기준을 사용한 경우 그 기준의 명칭)’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, 20××년 ×월 ×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‘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에 근거하여 볼 때,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,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. 또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,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·검토하였습니다.<별첨>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중요한 취약점의 시정조치 계획 이행결과 등20××년 × 월 × 일대 표 이 사 × × × (인)내부회계관리자 × × × (인) |
|  |

1.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의 운영실태보고서

|  |
| --- |
| xx주식회사 주주, 이사회 및 감사(위원회) 귀중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xx년 x월 x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.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(다른 기준을 사용한 경우 그 기준의 명칭)’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, 20××년 ×월 ×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취약점으로 인해 ‘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에 근거하여 볼 때,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.<중요한 취약점의 내용><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>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,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. 또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,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보고 내용의 기재사항을 직접 확인· 검토하였습니다.<별첨>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중요한 취약점의 시정조치 계획 이행결과 등20××년 × 월 × 일대 표 이 사 × × × (인) 내부회계관리자 × × × (인) |

### **[감사(또는 감사위원회)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]**

1.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의 평가보고서

|  |
| --- |
| ××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본 감사(위원회)는 20××년 ×월 ×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.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본 감사(위원회)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.본 감사(위원회)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감사(위원회)에게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,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,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.또한 본 감사(위원회)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또는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,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.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본 감사(위원회)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(다른 기준을 사용한 경우 그 기준의 명칭)’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본 감사(위원회)의 의견으로는, 20××년 ×월 ×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‘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에 근거하여 볼 때,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. <별첨>․권고사항․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시정 의견․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,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․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대안 20××년 × 월 × 일(감사 설치 회사) 감사 × × × (인)(감사위원회 설치 회사) 감사위원회 위원장 × × × (인) |

1.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의 평가보고서

|  |
| --- |
| ××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본 감사(위원회)는 20××년 ×월 ×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.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본 감사(위원회)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.본 감사(위원회)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감사(위원회)에게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,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,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.또한 본 감사(위원회)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,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.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본 감사(위원회)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(다른 기준을 사용한 경우 그 기준의 명칭)’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본 감사(위원회)의 의견으로는, 20××년 ×월 ×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취약점으로 인해 ‘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에 근거하여 볼 때,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.<중요한 취약점 및 시정조치 계획><별첨>․운영실태보고서에 보고한 중요한 취약점 요약․권고사항․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시정 의견․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,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․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대안 20××년 × 월 × 일(감사 설치 회사) 감사 × × × (인)(감사위원회 설치 회사) 감사위원회 위원장 × × × (인) |

## **2. 상장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**

### **[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]**

1.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의 운영실태보고서

|  |
| --- |
| xx주식회사 주주, 이사회 및 감사(위원회) 귀중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xx년 x월 x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.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**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**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**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**(다른 기준을 사용한 경우 그 기준의 명칭)’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, 20××년 ×월 ×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‘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에 근거하여 볼 때,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,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. 또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,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·검토하였습니다.<별첨>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중요한 취약점의 시정조치 계획 이행결과 등20××년 × 월 × 일대 표 이 사 × × × (인)내부회계관리자 × × × (인) |
|  |

1.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의 운영실태보고서

|  |
| --- |
| xx주식회사 주주, 이사회 및 감사(위원회) 귀중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xx년 x월 x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.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**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**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**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**(다른 기준을 사용한 경우 그 기준의 명칭)’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, 20××년 ×월 ×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취약점으로 인해 ‘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에 근거하여 볼 때,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.<중요한 취약점의 내용><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>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,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. 또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,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보고 내용의 기재사항을 직접 확인· 검토하였습니다.<별첨>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중요한 취약점의 시정조치 계획 이행결과 등20××년 × 월 × 일대 표 이 사 × × × (인) 내부회계관리자 × × × (인) |

### **[감사(또는 감사위원회)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]**

1.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의 평가보고서

|  |
| --- |
| ××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본 감사(위원회)는 20××년 ×월 ×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.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본 감사(위원회)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.본 감사(위원회)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감사(위원회)에게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,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,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.또한 본 감사(위원회)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또는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,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.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**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**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본 감사(위원회)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**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**(다른 기준을 사용한 경우 그 기준의 명칭)’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본 감사(위원회)의 의견으로는, 20××년 ×월 ×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‘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. <별첨>․권고사항․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시정 의견․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,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․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대안 20××년 × 월 × 일(감사 설치 회사) 감사 × × × (인)(감사위원회 설치 회사) 감사위원회 위원장 × × × (인) |

1.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의 평가보고서

|  |
| --- |
| ××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본 감사(위원회)는 20××년 ×월 ×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.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본 감사(위원회)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.본 감사(위원회)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감사(위원회)에게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,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,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.또한 본 감사(위원회)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,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.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**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**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본 감사(위원회)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**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**(다른 기준을 사용한 경우 그 기준의 명칭)’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본 감사(위원회)의 의견으로는, 20××년 ×월 ×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취약점으로 인해 ‘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에 근거하여 볼 때,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.<중요한 취약점 및 시정조치 계획><별첨>․운영실태보고서에 보고한 중요한 취약점 요약․권고사항․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시정 의견․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,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․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대안 20××년 × 월 × 일(감사 설치 회사) 감사 × × × (인)(감사위원회 설치 회사) 감사위원회 위원장 × × × (인) |

##  **3. 비상장중소기업**

### **[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]**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xx주식회사 주주, 이사회 및 감사(위원회) 귀중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xx년 x월 x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.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통제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있습니다. (미준수 사항이 있는 경우: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관련 통제절차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)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통제활동 | 예 | 아니오 | 비고 |
| · 회계정보의 식별·측정·분류·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의 준수 |  |  |  |
| ·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의 준수 |  |  |  |
| ·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의 준수 |  |  |  |
| · 회계정보를 기록·보관하는 장부의 관리방법과 위조·변조·훼손 및 파기의 방지를 위한 통제절차에 관한 사항의 준수 |  |  |  |
| ·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한 임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의 준수 |  |  |  |
| ·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의 준수 |  |  |  |
| · 회계정보를 작성·공시하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절차에 관한 사항의 준수 |  |  |  |
| · 주식회사의 대표자 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의 작성·공시를 지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직원의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의 준수 |  |  |  |
| ·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준수 |  |  |  |

※ 비고한에는 예외사항 또는 특이사항을 기재하거나 미준수의 사유을 기재20××년 × 월 × 일대 표 이 사 × × × (인) 내부회계관리자 × × × (인) |

### **[감사(또는 감사위원회)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]**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××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본 감사(위원회)는 다음과 같이 20xx년 x월 x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.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통제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있습니다. (미준수 사항이 있는 경우: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관련 통제절차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)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통제활동 | 예 | 아니오 | 비고 |
| · 회계정보의 식별·측정·분류·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의 준수 |  |  |  |
| ·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의 준수 |  |  |  |
| ·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의 준수 |  |  |  |
| · 회계정보를 기록·보관하는 장부의 관리방법과 위조·변조·훼손 및 파기의 방지를 위한 통제절차에 관한 사항의 준수 |  |  |  |
| ·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한 임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의 준수 |  |  |  |
| ·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의 준수 |  |  |  |
| · 회계정보를 작성·공시하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절차에 관한 사항의 준수 |  |  |  |
| · 주식회사의 대표자 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의 작성·공시를 지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직원의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의 준수 |  |  |  |
| ·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준수 |  |  |  |

※ 비고한에는 예외사항 또는 특이사항을 기재하거나 미준수의 사유을 기재20××년 × 월 × 일(감사 설치 회사) 감사 × × × (인)(감사위원회 설치 회사) 감사위원회 위원장 × × × (인) |

# **Ⅱ. 연결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예시**

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는 회사

## **1. 상장대기업**

### **[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]**

1.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의 운영실태보고서

|  |
| --- |
| xx주식회사 주주, 이사회 및 감사(위원회) 귀중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xx년 x월 x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.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 또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(다른 기준을 사용한 경우 그 기준의 명칭)’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, 20××년 ×월 ×일 현재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‘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에 근거하여 볼 때,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,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. 또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,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·검토하였습니다.<별첨>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중요한 취약점의 시정조치 계획 이행결과 등20××년 × 월 × 일대 표 이 사 × × × (인)내부회계관리자 × × × (인) |
|  |

1.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의 운영실태보고서

|  |
| --- |
| xx주식회사 주주, 이사회 및 감사(위원회) 귀중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xx년 x월 x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.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 또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(다른 기준을 사용한 경우 그 기준의 명칭)’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, 20××년 ×월 ×일 현재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취약점으로 인해 ‘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에 근거하여 볼 때,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.<중요한 취약점의 내용><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>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,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. 또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,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보고 내용의 기재사항을 직접 확인· 검토하였습니다.<별첨>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중요한 취약점의 시정조치 계획 이행결과 등20××년 × 월 × 일대 표 이 사 × × × (인) 내부회계관리자 × × × (인) |

### **[감사(또는 감사위원회)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]**

1.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의 평가보고서

|  |
| --- |
| ××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본 감사(위원회)는 20××년 ×월 ×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.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본 감사(위원회)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.본 감사(위원회)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감사(위원회)에게 제출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,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,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.또한 본 감사(위원회)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또는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,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,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.회사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본 감사(위원회)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(다른 기준을 사용한 경우 그 기준의 명칭)’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본 감사(위원회)의 의견으로는, 20××년 ×월 ×일 현재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‘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에 근거하여 볼 때,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. <별첨>․권고사항․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시정 의견․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,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․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대안 20××년 × 월 × 일(감사 설치 회사) 감사 × × × (인)(감사위원회 설치 회사) 감사위원회 위원장 × × × (인) |

1.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의 평가보고서

|  |
| --- |
| ××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본 감사(위원회)는 20××년 ×월 ×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.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본 감사(위원회)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.본 감사(위원회)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감사(위원회)에게 제출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,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,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.또한 본 감사(위원회)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,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,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.회사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본 감사(위원회)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(다른 기준을 사용한 경우 그 기준의 명칭)’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본 감사(위원회)의 의견으로는, 20××년 ×월 ×일 현재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취약점으로 인해 ‘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에 근거하여 볼 때,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.<중요한 취약점 및 시정조치 계획><별첨>․연결운영실태보고서에 보고한 중요한 취약점 요약․권고사항․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시정 의견․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,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․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대안 20××년 × 월 × 일(감사 설치 회사) 감사 × × × (인)(감사위원회 설치 회사) 감사위원회 위원장 × × × (인) |

## **2. 상장중소기업**

### **[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]**

1.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의 운영실태보고서

|  |
| --- |
| xx주식회사 주주, 이사회 및 감사(위원회) 귀중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xx년 x월 x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.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**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**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 또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**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**(다른 기준을 사용한 경우 그 기준의 명칭)’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, 20××년 ×월 ×일 현재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‘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에 근거하여 볼 때,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,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. 또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,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·검토하였습니다.<별첨>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중요한 취약점의 시정조치 계획 이행결과 등20××년 × 월 × 일대 표 이 사 × × × (인)내부회계관리자 × × × (인) |
|  |

1.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의 운영실태보고서

|  |
| --- |
| xx주식회사 주주, 이사회 및 감사(위원회) 귀중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xx년 x월 x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.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**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**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 또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**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**(다른 기준을 사용한 경우 그 기준의 명칭)’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, 20××년 ×월 ×일 현재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취약점으로 인해 ‘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에 근거하여 볼 때,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.<중요한 취약점의 내용><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>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,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. 또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,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보고 내용의 기재사항을 직접 확인· 검토하였습니다.<별첨>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중요한 취약점의 시정조치 계획 이행결과 등20××년 × 월 × 일대 표 이 사 × × × (인) 내부회계관리자 × × × (인) |

### **[감사(또는 감사위원회)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]**

1.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의 평가보고서

|  |
| --- |
| ××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본 감사(위원회)는 20××년 ×월 ×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.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본 감사(위원회)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.본 감사(위원회)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감사(위원회)에게 제출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,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,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.또한 본 감사(위원회)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또는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,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,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.회사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**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**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본 감사(위원회)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**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**(다른 기준을 사용한 경우 그 기준의 명칭)’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본 감사(위원회)의 의견으로는, 20××년 ×월 ×일 현재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‘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에 근거하여 볼 때, **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.** <별첨>․권고사항․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시정 의견․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,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․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대안 20××년 × 월 × 일(감사 설치 회사) 감사 × × × (인)(감사위원회 설치 회사) 감사위원회 위원장 × × × (인) |

1.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의 평가보고서

|  |
| --- |
| ××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본 감사(위원회)는 20××년 ×월 ×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.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본 감사(위원회)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.본 감사(위원회)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감사(위원회)에게 제출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,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,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.또한 본 감사(위원회)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,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,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.회사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**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**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본 감사(위원회)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**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**(다른 기준을 사용한 경우 그 기준의 명칭)’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본 감사(위원회)의 의견으로는, 20××년 ×월 ×일 현재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취약점으로 인해 ‘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에 근거하여 볼 때, **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.**<중요한 취약점 및 시정조치 계획><별첨>․연결운영실태보고서에 보고한 중요한 취약점 요약․권고사항․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시정 의견․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,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․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대안 20××년 × 월 × 일(감사 설치 회사) 감사 × × × (인)(감사위원회 설치 회사) 감사위원회 위원장 × × × (인) |

평가 및 보고 적용 기업 문단54에 따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문이 있는 경우 사용하는 예시입니다.

# **Ⅲ. 기타**

## **5. 평가 및 보고 적용 기업 문단54에 따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운영실태보고서 예시**

### **[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]**

### -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의 운영실태보고서

|  |
| --- |
| xx주식회사 주주, 이사회 및 감사(위원회) 귀중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xx년 x월 x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.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‘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(다른 기준을 사용한 경우 그 기준의 명칭)’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, 20××년 ×월 ×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‘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(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)’에 근거하여 볼 때,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.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피합병부문인 xx주식회사 부문(합병기준일 20xx년 x월 x일,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총액 및 매출액은 x원 및 x원, 합병 후 자산총액 및 매출액의 x% 및 x%에 해당)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.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,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. 또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,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·검토하였습니다.<별첨>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중요한 취약점의 시정조치 계획 이행결과 등20××년 × 월 × 일대 표 이 사 × × × (인)내부회계관리자 × × × (인) |

-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의 운영실태보고서 및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도 상기와 동일 방식으로 적용